



1

식품 안전관련 법·제도 개선 추진

□ 식품 안전관리 Control Tower 역할 수행

○ 식품안전관리계획 수립·운영
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계획을 수립*,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

* 총리실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(식약처·농식품부·해수부 등)에서 제출한 식품안전관리계획을 기초로 3년마다 「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」 수립

- ☞ 식약처는 모든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·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
·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관리업무는 농식품부·해수부에 위탁

○ 식품안전 현안 및 사건·사고 대응 총괄

- 처내 여러부서가 관련된 식품안전 현안 또는 사건·사고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

*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시리얼 유통, 살충제 계란사건 등

□ 식품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제도개선

○ 법령* 제·개정 및 법안국회 대응, 타 부처 입안·발의 법률안 검토

* 「식품안전기본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
○ 식품 관련 법령 제도개선을 통한 합리적 규제개선

- 규제개혁신문고, 지자체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

* 개선 사례 : 조리장 공동이용 허용, 푸드트럭 영업장소 신청제 도입 등

○ 식품위생법령 관련 지방청·지자체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

□ 식품 안전관련 국제협력

-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 총회 및 25개 분과위원회 총괄 대응
 - 국제식품규격과 관련된 정부부처간 의견 조정 및 협의
 - * CODEX : FAO/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하에 설립된 식품규격개발기구
- 식품분야 국제회의 추진 및 제외국 정책동향 파악
 -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 상위국가를 대상으로 협력회의 정례화 추진
 - 제외국 식품안전 분야 주요 동향 파악 및 무역현안 제기내용 대응

□ 법인단체 운영 및 생산실적 관리

-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단체의 운영 지원 및 관리
 -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사·감독 업무 수행
 - * 식품분야 법인은 총 32개(특수법인 3, 사단 27, 재단 2)
-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관리
 - 매년 식품업체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집계·분석하여 식품산업의 구조와 분포, 생산 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
 - *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은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중('98.10.~)

□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

- 식품정책 결정 및 심의를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
 - 식품위생심의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*를 통해 식품위생, 식품안전 정책, 식품등의 기준·규격 설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·논의
 - * 분과위원회(7개) : 위생제도, 유해오염물질, 잔류물질, 미생물, 식품첨가물, 위해평가, 방사능[심의위원 총 100명(당연직 : 6명, 위촉직 : 94명)]

□ 식품관련 업체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

-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·위생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관련 업체*에 출입하여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**

* 대상 : 약 107만여 개소(제조업체 33,311, 음식점 840,620, 집단급식소 45,907 등)

**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2조(출입·검사·수거 등)

- 배달음식점, 프랜차이즈 업체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지도·점검 및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제품 수거·검사 실시

* 점검실적('17년) : 828,506개소 점검 36,426개소 적발(부적합률 4.4%)

** 수거·검사 실적('17년) : 78,287건 수거, 272건 부적합(부적합률 0.4%)

□ 위해식품 판매 차단 및 회수

- 기준·규격에 부적합한 위해식품을 신속히 공개하고, 판매 차단 및 회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

* 회수 현황(국내) : ('15) 270 건 → ('16) 191 건 → ('17) 147 건

- 위해식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*을 이용한 판매 차단 및 관할 행정기관의 회수 명령

* 위해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(결제)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식품 매장에 설치 중('17년 기준 88,722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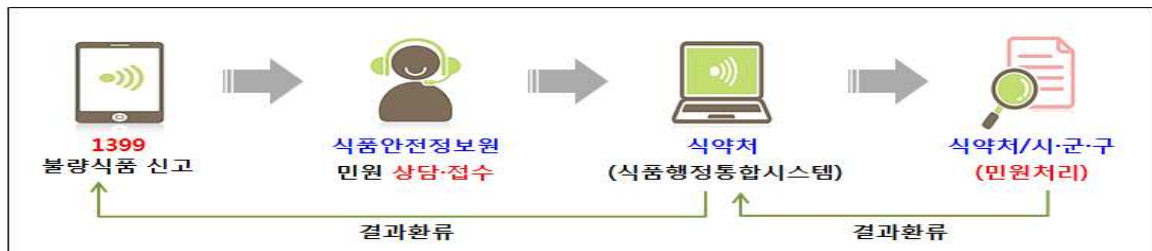


<위해 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개요>

□ 부정·불량식품신고(1399) 및 신고 포상금

- 식품위생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, 감시를 보완

* 1399신고 현황(건) : ('15)17,093 → ('16)16,686 → ('17)15,895



- 소비자가 1399(식품안전정보원)로 부정·불량식품을 신고하면,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·처분 등 조치하고 포상금 지급

* 신고포상금 지급현황(천원) : ('15)24,990 → ('16)19,291 → ('17)4,340

□ 식품 등의 이물 관리

- 식품에서 유리조각·벌레 등 이물이 발견될 경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

* 이물보고(신고) 현황(건) : ('15)6,017 → ('16)5,332 → ('17)3,239

- 소비자가 클레임 제기한 이물 중 위해도가 높은 이물은 제조사 등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,

* ‘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’(식약처 고시) 운영

- ‘이물 관리 매뉴얼’ 제작·보급 및 ‘이물관리 네트워크’(17년 176개사 참여) 운영을 통해 제조사 등의 이물 저감화 유도

* 이물네트워크 참여 현황 : ('15)109 → ('16)146 → ('17)176개사

□ 기후·환경 변화에 따른 위생 취약요소 집중 관리

- 기온상승에 따른 위해요소 증가 우려 식품군 집중 관리 실시
 - 즉석섭취식품(도시락), 비가열식품(김치), 음식점 식재료(신선식품) 등 하절기 미생물 증가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실시

□ 내부고발, 중대 위해신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

- 1399 민원사항 중 내부고발, 중대 위해신고에 대한 단속부터 위해식품 회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중대 민원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업계에 만연된 불법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전국단위 점검시스템 가동

□ 잠재적 중대 위해요소 기획 감시

- 식품업계 정보,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불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기획 점검 실시
 - * 식품업계 담당자 등 전문가 Pool 확대, 검·경 등 수사기관 및 단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진 협의회 등을 통해 단속 실마리 정보 수집 확대

□ 고의·상습 문제 영업자 집중 관리

- '문제영업자 관리시스템'을 통해 고의적 위반행위 개연성이 높거나 파급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리 및 단속 강화
- 원스트라이크아웃* 위반행위 중점 점검으로 악질업체 영구퇴출
 - * 유통기한 변조, 부적합 제품 판매, 영업정지기간 영업 등은 한 번만 위반해도 퇴출 조치
- 농식품부, 해수부, 관세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하여 관세·시세차익이 큰 품목*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집중 합동 단속
 - * 농산물(고추, 마늘, 참깨 등), 수산물(참돔, 민어 등), 축산물(소고기, 돼지고기 등)

□ 식품 표시 관련 제도 개선 및 고시 제·개정

○ 식품·축산물·건강기능식품 표시 제도개선 총괄

- 규제개혁신문고, 중소기업 애로과제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

○ 식품·축산물·건강기능식품 등 식품표시 관련 고시* 제·개정

- *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축산물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

□ 영양표시 제도 운영

○ 가공식품 등의 영양표시 제도 운영

-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 식품* 확대

- * 레토르트식품, 과자, 캔디류, 빵류, 초콜릿류, 즉석섭취식품 등 16개 식품군

○ 라면 등 다소비식품*의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트륨 비교표시제 운영

- * 조미식품이 포함된 국수, 냉면, 유탄면류, 햄버거, 샌드위치 등 5종

□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강화

○ 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 제·개정

○ GMO 표시제 관련 주요 현안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논의, 검토를 위한 '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*' 운영

- * 산업체, 소비자단체, 학계 전문가 등 GMO 표시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

-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 및 합의 도모

- 표시제 개선에 따른 사회·경제적 영향분석, 제외국 표시제도 도입사례 및 사후 관리개선 방안 정책연구 실시

□ 식품 안전인증기준(HACCP) 제도 운영

○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 운영 총괄

- HACCP* 의무 적용 대상 품목** 관리, 인증 및 사후관리 총괄

* 원재료부터 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·판매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·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제도

** 의무적용품목 ① 식품(16개 식품군) : 어목류, 배추김치, 빵류,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② 축산물(4개 업종) : 도축업, 집유업, 유가공업, 알가공업

○ HACCP인증 확대를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실시

- HACCP 인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 시설개선비용*(컨설팅 비용) 및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**

*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 : ('16) 522개소 → ('17) 660 → ('18) 576

** 기술지원 : ('16) 3,664개소 → ('17) 3,129 → ('18) 4,300

○ HACCP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여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고시 제·개정

□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

○ 영유아식, 조제유류,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소 이력추적 의무적용

- 식품법령 개정을 통한 임산부·환자용 제품** 등 고위험 식품군에 대한 식품이력추적 의무 적용확대

* 식품이력추적제도 : 식품의 제조~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관리하여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회수정보를 제공

** 임산수유부용식품, 특수의료용도등식품,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등

○ 식품이력추적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 대상 설명회, 기술지원 등

* 등록업소(누계) : ('14) 1,282 → ('15) 3,287 → ('16) 5,901 → ('17) 6,493

□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제도개선
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·개정 및 법안국회 대응
-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총괄
 - 지자체, 규제개혁신문고, 업계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및 반영

□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

-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
 - * 점검실적('17년) : 2,590개소 점검 49개소 적발(부적합률 1.9%)
 - ** 수거·검사 실적('17년) : 3,522건 수거, 21건 부적합(부적합률 0.6%)
-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* 관리
 -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접수된 이상사례 신고**의 심각도·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재평가·정보공개 등 조치
 - *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발생하는 구토, 두드러기, 두통 등 바람직하지 않은 징후 또는 증상, 의약품 부작용과 유사한 용어
 - ** 이상사례 신고건수: ('15) 502건 → ('16) 696건 → ('17) 874건

□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관리

- 위생적이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·공급을 위한 GMP* 제도 도입·운영
 - *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관리 단계 표준화를 통한 품질관리
-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GMP 적용 단계적 의무화 및 컨설팅 지원
 - * (기존 업체) 연 매출 20억 이상('18.12) → 10억 이상('19.12) → 10억 미만('20.12)
 - (신규 업체) '17년 이후 영업허가 시부터

□ 주류안전에 대한 체계적·통합적 관리

- 주류 안전관리 업무이관(국세청→식약처, '13.7)에 따라, 주류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
 - 「주세법」의 세원관리(국세청), 「전통주진흥에관한법률」의 산업진흥(농식품부), 「식품위생법」의 안전관리(식약처) 등 업무 협의 및 연계
 - * 식품첨가물 사용기준, 첨가재료 명칭 및 사용범위 등 상이한 제도 통일

□ 주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된 안전관리

- 주류 업체의 위생수준별로 차등관리 하는 위생관리등급제 시행
 - 위생수준에 따라 자율·일반·중점 등급*으로 분류하여, 우수 업체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미흡업체는 위생관리 강화
 - * 전체 969개소 중 자율 64개소, 일반 856개소, 중점 49개소
- 명절 대비 선물용·제수용 주류 및 계절별 성수 주류(소주, 맥주, 탁주, 리큐르 등), 젊은층 선호 수제맥주 등 기획점검 및 수거·검사
 - * 수거 건수 : ('18) 1,000건 → ('19) 1,100건 → ('20) 1,200건
- 지하수 사용 주류 업체 사전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특별점검
 - 수질검사 일자, 주변 가축매몰지 위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수질검사 사전 알리미 서비스 제공
 - 부적합 지하수 사용 확인 시 봉인 등 긴급조치
 - * 신속 봉인 및 시설 개수, 상수도 전환 등
- 맥주제조업체의 이취 관리를 위해 중요 원료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한 자율점검제 운영

□ 주류제조업체 지원

- 소규모 주류업체 지원을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지정·운영
 - 수도권 · 중부권 · 영남권 · 호남권 4개 권역별 센터 지정
 -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, 주류 제조안전관리 현장 컨설팅 등 실시
 - * 지원 업체수 : ('18) 200개소 → ('19) 250개소 → ('20) 300개소
- 주류 안전·품질관리 능력향상 등을 수행할 '주류안전관리인' 육성
 - 과실주, 증류주, 수제맥주 제조업체 등 60개소 신규 선발
 - 소주, 맥주, 탁주 등 기존 주류안전관리인(120개소)을 대상으로 최신 주류안전관리동향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 보수 교육
 - * 도입 업체수 : ('18) 180개소 → ('19) 250개소 → ('20) 300개소

□ 주류 정책자문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

- '주류안전 정책자문협의회' 운영
 - 주류관련 정책, 법령 제·개정 및 사건사고 발생시 개선대책 등 자문
 - * 학계, 업계 주류 전문가 중 발효주, 증류주 분과 36명으로 구성
- 국제청과 협업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와 첨가물을 확대하여 신제품 개발 등이 용이하도록 지원